



면접교섭이란?

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고 전화 통화 및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

면접교섭서비스는 전문가(면접교섭 담당자, 상담위원)의 개입으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.

면접교섭은 왜 필요할까요?

이혼은 배우자와의 이별이지, 자녀와의 이별은 아닙니다.

면접교섭을 통해 비양육부·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자녀의 **정서적 성장에 큰 영향**을 미칩니다.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놓인 자녀들에게 면접교섭은 매우 중요한 만남입니다. **양쪽 부모와의 안전한 관계**는 자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.
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
양육부·모 또는 비양육부·모

※면접교섭서비스는 당사자(부·모)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,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.

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?



• **이용시간** 평일 09:00~18:00 ※사전예약 필수, 토요일 예약운영

• **전화상담** 053-819-5530 / 819-5500

• **내방상담** 경산시가족센터(경북 경산시 경산로 131)



[홈페이지]

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?

구분	이용대상	내용
개별면접교섭 (8회기) ※최대 12회기	양육부·모 비양육부·모 미성년자녀	• 면접교섭 갈등 중재를 위한 상담 • 협력적 부모역할을 위한 (비)양육부·모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• 안전한 공간에서 비양육부·모와 자녀의 만남 지원 • 비양육부·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평가와 개입
집단면접교섭		• 비양육부·모와 자녀의 상담, 교육, 체험활동 등 집단 프로그램

※ 가정의 상황에 맞게 개별 혹은 집단면접교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(중복참여가능).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신청서식(구비서류 포함) 작성 후, **방문 또는 이메일(ksmfc@naver.com)**로 제출합니다.

신청서식 및 구비서류	• 면접교섭지원 신청서식 홈페이지(gyeongsan.familynet.or.kr) > 공지사항 > 면접교섭지원 신청서식 ※면접교섭지원 신청서식(신청서, 신청동의서(피신청인용),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, 서비스 이용규칙)
	• 구비서류 (공통)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1부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)1부 (해당자) 면접교섭 합의서(판결문, 결정문, 조정조서 등)1부

면접교섭서비스 이용 규칙

공통	양육부·모	비양육부·모
• 약속된 시간을 준수합니다. • 서비스 참여 전, 음주 및 약물복용을 하지 않습니다. • 일정 변경 필요시, 해당일 1주일 전에 미리 연락하고 조정하여야 합니다. • 면접교섭 도중, 상해, 심한 폭언, 자녀 탈취 등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 • 면접교섭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거나, 면접교섭 담당자 및 상담위원의 안내를 따르지 않을 경우, 면접교섭의 이용이 제한·중단될 수 있습니다.	• 원칙적으로 양육부·모가 자녀와 센터에 동행해야 합니다. • 자녀에게 필요한 용품(기저귀, 우유, 젖병, 물티슈 등)은 양육부·모가 직접 가져와야 합니다. • 자녀의 건강상태와 약 복용, 알레르기 등에 관한 특이사항 등 자녀의 신체 건강과 안전에 관한 고려사항은 면접교섭 회기 전, 면접교섭 담당자나 상담 위원에게 미리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.	• 대리인이 동반할 경우, 사전에 면접교섭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어 확인된 대리인을 통해서만 면접교섭이 진행됩니다. • 면접교섭 중에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혐담을 하지 않습니다. •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난감, 음식, 선물 등을 면접교섭실 내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제한됩니다.